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표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기술인력 조건(시행령 제16조의3 관련) 완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기술인력 조건(시행령 제16조의3 관련) 완화(안 시행령 별표)

- 가. 기술인력 실무경력을 학위·자격 취득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
- 나.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에게는 특정 전공 분야 요건 삭제
- 다. 2종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은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인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6.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당 기술인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 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기술인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 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자격기준: 필수인원 6명(각 항목별 최소 기술인력 포함)

기술 자격	전공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	<u>삭제</u>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	<u>삭제</u>
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또는 기상예보 기술사 2)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u>취득한 사람으로서</u> 그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u>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3)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u>취득한 사람으로서</u> 그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u>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4) 전공 분야 기사 자격을 <u>취득한 사람으로서</u> 그 전공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u>자격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5)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기상기사, 정보처리기사 2)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u>취득한 사람으로서</u>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u>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4)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u>취득한 사람으로서</u>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u>자격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5)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u>졸업한 사람으로서</u>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u>졸업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 전산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당 기술인력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u>1종의 자격에 대하여</u>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기술인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자격기준: 필수인원 6명 (각 항목별 최소 기술인력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 자격</th><th>전공 분야</th></tr> </thead> <tbody> <tr> <td>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td><td>- 수자원공학</td></tr> <tr> <td>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td><td>-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td></tr> <tr> <td>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td><td>-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td></tr> </tbody> </table>	기술 자격	전공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	- 수자원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당 기술인력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u>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u>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기술인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자격기준: 필수인원 6명 (각 항목별 최소 기술인력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 자격</th><th>전공 분야</th></tr> </thead> <tbody> <tr> <td>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td><td><u>삭제</u></td></tr> <tr> <td>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td><td><u>삭제</u></td></tr> <tr> <td>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td><td>-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td></tr> </tbody> </table>	기술 자격	전공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	<u>삭제</u>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	<u>삭제</u>	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기술 자격	전공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	- 수자원공학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기술 자격	전공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1명 이상	<u>삭제</u>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	<u>삭제</u>																
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해양 기술사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또는 기상예보 기술사 2)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u>취득하고</u> 그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u>종사한</u> 사람 3)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u>취득하고</u> 그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u>종사한</u> 사람 4) 전공 분야 기사 자격을 <u>취득하고</u> 그 전공분야에서 7년 이상 <u>종사한</u> 사람 5)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상예보 기술사 2)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u>취득한 사람으로서</u> 그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u>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3)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u>취득한 사람으로서</u> 그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u>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4) 전공 분야 기사 자격을 <u>취득한 사람으로서</u> 그 전공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u>자격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5)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기상기사, 정보처리기사 2)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u>취득한</u> 사람 3)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u>취득하고</u>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u>취득하고</u>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기상기사, 정보처리기사 2)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u>취득한</u> 사람 3)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u>취득한 사람으로서</u>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u>학위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4)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u>취득한 사람으로서</u>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u>자격 취득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5)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u>졸업한 사람으로서</u>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u>졸업 전의 경력 포함</u>) 사람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 전산학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연 락 처	(044) 205 - 5355